2020학년도 2학기 원격수업 운영계획

호남제일고등학교

1.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전라북도 방역 기준)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가. 1단계: 모든 학년 등교수업
 나. 2단계: 밀집도 2/3 유지(8. 31. ~ 종료시)
  - 3학년은 계속 등교수업(수능전후 조정가능)
  - 1, 2학년은 격주로 등교수업 및 원격수업 실시(첫 주는 1학년 등교, 2학년 원격)
 다. 3단계: 모든 학년 원격수업
  - 단, 교육청지침으로 특정 학년 등교수업 가능할 경우 해당 학년 등교수업 실시

2. 원격수업의 형태
 - 실시간 쌍방향,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 등의 방법 중에서 자유롭게 활용하여 원격수업을 실시한다.

3. 원격수업의 진행
 가. 학년별, 과목별, 차시별로 학습계획을 세워 주단위로 운영한다.
 나. EBS 온라인 클래스를 활용하여 학급별로 운영한다.
 다. 전 교사가 온라인 클래스에 가입하고 수업 담당반에 교과를 개설한다.
 라. 학급별 클래스에 교과별로 차시별 수업콘텐츠를 제시한다.
 마. 학생은 학급별 시간표대로 EBS온라인클래스 과목별 강의 콘텐츠를 이용하여 원격수업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가정의 스마트환경이 다르므로 저녁이나 주말에 원격수업을 할 수도 있다.

4. 학생의 출석
 가. 담임은 코로나19관련 일일점검과 연계하여 매일 아침 출석체크를 실시한다.
 나. 교과 출결은 차시별로 온라인 클래스에서 교과담임이 체크하여 한다.
 다. 담임은 출결을 수합하고 미참여 또는 미이수 학생에 대해 원격수업을 독려한다.
 라. 미이수 콘텐츠는 차시별로 결과 처리한다.
 마. 출결확인은 당일 차시별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주일(7일) 단위로 종합하여 한다. 추후 미참여 또는 미이수로 출석이 확인되지 않은 학생은 추후 일정기간을 정해 이수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때는 교과담임이 이수를 독려한다.

5. 평가

가. 원격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을 근거로 등교수업 이후에 지필 및 수행평가를 통해 성취도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원격수업 중에 학생의 학습 과정과 결과를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토대로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다.

다. 원격수업 당시 학생이 작성한 수행 과제물 등을 활용한 수업을 실시한 후 수행과정 및 결과를 직접 관찰한 경우 평가 또는 학생부 기재할 수 있다.

6. 비고

가. 원격수업이 길어져 등교수업이 현격히 줄어들 경우 교육청 지침에 의거 교과협의회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나. 코로나 19 의심 증상 학생 결시 관련 제출 서류 안내

- 코로나 19 의심 증상 학생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했을 경우(코로나 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는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문자 통지 사본 등)를 제출
-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와 학부모 의견서 및 선별진료소 등의 방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진료확인서 등)를 제출

「코로나19로 인한 지필평가 인정점의 처리」

1.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인정점 부여

대상	등교중지 기간	출결처리 등	인정점
확진학생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출석인정결석 ○별도 실험실 미제공	기준점수의 100%
의사학생	14일	○출석인정결석 ○별도 실험실 미제공	기준점수의 100%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14일	○출석인정결석 ○별도 실험실 미제공	기준점수의 100%
자가격리학생	14일	○출석인정결석 ○별도 실험실 미제공	기준점수의 100%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출석인정결석 ○별도 실험실 미제공	기준점수의 100%
유증상학생	증상발현 후 3~4일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출석인정결석 ○진단검사 결과 음성인 학생의 별도 시험실 제공	기준점수의 100% 또는 80%

*** 유증상학생이 고사기간 이외의 시기에 음성판정을 받았을 때에는 별도 시험실을 제공하되, 학생이 이에 응하지 않고 고사에 응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준점수의 80%를 인정비율로 적용함.**

단, 고사기간 중에 증상발현이 된 경우에는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단 받고 그 결과를 제출한 후 100%의 인정비율을 적용함.

2.기타 사유 결시 학생의 인정점 부여

대상	조건	출결처리 등	인정점
고위험군학생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출석인정결석 ○별도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이 판단	기준점수의 100%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관심', '주의'	○질병결석 ○별도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이 판단	기준점수의 80%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출석인정결석	기준점수의 80%
기타결석 (감염 우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기타 결석 ○별도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이 판단	기준점수의 80%
미인정 결석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학교장이 합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결석	미인정 결석	최하점의 차하점

*** 정기고사 기간에 원칙적으로 교외체험학습은 허용하지 않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는 학교장이 결정함.**

참조. 평균점수 비율을 활용한 최종인정점 산출 방법

고사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학생들의 과목별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인정점 산출

$$\text{최종 인정점} = \text{기준점수} \times \frac{\text{결시고사 평균}}{\text{기준고사 평균}} \times \text{인정점 부여비율}$$

과목	기준고사(1차고사)		결시고사(2차고사)	최종 인정점
	평균	기준점수	평균	
수학	68.0	65	62.3	47.64

* 1학기 2차고사를 질병 결시한 학생의 최종 인정점 계산
  1) 68.0 : 65 = 62.3 : 인정기준점수
  2) 인정기준점수 = (65×62.3) / 68 = 59.55
  3) 인정기준점수 × 0.8(병결 인정점 부여비율) = 47.64
  4) 최종 인정점 = 47.64

「코로나19로 인한 결석생의 처리」

1.등교중지학생 : 특정 학생이「학교보건법」제8조,「학교보건법시행령」제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으로, 일과 중 등교중지되는 경우 '출석인정 조퇴'로 처리한다.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시 '출석인정 결석' 처리 가능

대상	등교중지 기간	등교재개 요건	출결증빙 자료
확진학생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 보건당국에서 판단	입원치료 통지서 등 (보건소 발부)
의사학생	14일	▪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 경과 시	입원치료 통지서 등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14일	▪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등교중지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격리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 (보건소 발부)
자가격리학생	14일	▪ 자가 격리 13일차에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격리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된 경우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학부모 의견서 등
유증상학생	증상발현 후 3~4일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 보건소, 선별진료소, 콜센터의 조치에 따르되, 상태 호전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의견서, 진료확인서 등

2. 고위험군학생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복지카드'의 소지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단,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다.

상황	처리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출석인정 결석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질병결석

3. 기타 미등교학생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일 때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기타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